

(앞 쪽)

제	호
역학조사반원증	
(활동기간: ~)	
사 진 3cm×4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배경 그림 없이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	
성 명 기 관 명	

60mm×90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색상: 연노랑색)

(뒤 쪽)

역학조사반원증		
소속/직급:		
성 명:		
생년월일:		
위 사람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임을 증 명합니다.		
년 월 일		
기 관 장 명 의 직인		
1.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역학조사 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관할 행정기관, 관련 기관· 시설 및 단체의 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3항 및 제29 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 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. 2.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하지 못합니다.		